

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의4서식] <개정 2025. 7. 1.>

[] 산재보험 [] 고용보험 () 년도 보수총액 신고서(근로자·예술인용)

※ 신고는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(total.comwel.or.kr)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(CD 등)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(10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).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하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			처리기간	5일
------	--	------	--	--	--	--	--	------	----

관리번호		사업장명		대표자		산재업종		(요일:)	
------	--	------	--	-----	--	------	--	--------	--

사업장 소재지		전화번호		팩스번호	
---------	--	------	--	------	--

성명	주민(외국인)등록번호	① 보험료부과구분	산재보험			고용보험			
			취득일(전입일)	전보일(전출일)	② 연간 보수총액(원)	취득일(전입일)	전보일(전출일)	③ 종사지코드	④ 연간 보수총액(원)
일용근로자 보수총액 (※뒤쪽 작성방법 제4호 참조)			⑤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			⑥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(단기예수인) 보수총액		근로자 종사 사업 예술인 종사 사업	
						⑥-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(실업급여만 적용 제외)			
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(산재보험만 해당) (※뒤쪽 작성방법 제5호 참조)			⑦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(일용 제외)						
			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						
⑨ 합계			산재보험	②+⑤+⑦+⑧+⑭		고용보험	근로자 종사 사업(④+⑥+⑮) 예술인 종사 사업(④+⑥)		

※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6조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(이하 “자활근로종사자”라 합니다)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“노조전임자”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은 뒤쪽의 ⑬란에 적습니다.

⑩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 (※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)				⑪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(※ ⑤,⑥ 또는 ⑦, ⑧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)													
구분	업종변경 전 (. . . ~ . . .)		업종변경 후 (. . . ~ . . .)		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사업장의 보수총액(원)					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(명)												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10제1항·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·제2항·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·예술인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신고인(사업주) (서명 또는 인) / [] 보험사무대행기관

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·센터)장 귀하

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“노조전임자”의 보수총액(※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)

관리번호		사업장명			사업장 소재지					
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① 보험료 부과구분	산재보험			고용보험				
			취득일 (전입일)	전보일 (전출일)	⑭ 연간 보수총액(원)	취득일 (전입일)	전보일 (전출일)	③ 종사지 코드	⑮ 연간 보수총액(원)	
									실업급여	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

※ 위 ⑮란의 “고용보험 연간 보수총액”은 “실업급여”와 “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”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※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일정 기간만을 노동조합에 전임한 경우에는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⑬란에 같이 적습니다.

작성방법

1. ①란의 “보험료 부과구분” 부호의 내용

부과 구분 부호	부과범위				대상 종사자
	산재 보험	임금채권 부담금	실업 급여	고용안정· 직업능력개발	
51	0	0	x	x	09.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.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. 항운노조원(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)
52	0	x	x	x	03. 현장실습생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) 13. 항운노조원(임금채권부담금 소충승소)
54	0	x	0	0	22. 자활근로종사자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, 차상위계층, 주거·의료·교육·문화·체육·복지 급여 수급자)
55	x	x	0	0	05.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. 「선원법」 및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 적용자 07. 해위피난자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)
56	x	x	0	x	01. 별정직·임기제(일반, 전문, 시간선택제, 한시)공무원 16. 노조전임자(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) 25. 예술인 28. 고용허가외국인(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)
58	0	x	x	0	21. 자활근로종사자(생계급여 수급자)
60	0	0	x	0	27. 고용허가외국인(당연적용대상)

2. ②, ④, ⑭ 및 ⑮란의 “연간 보수총액”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.

- *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: 「소득세법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(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)
- * 예술인의 연간 보수총액: 「소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·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
- * 휴업·휴직 및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(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 휴가)를 말합니다)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시키고,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합니다.

과납 보험료 선납 총당 또는 반환 신청서

과납된 [] 산재보험료, []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선납 총당 또는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반환금 입금 계좌 () 은행 계좌번호: 예금주: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제2항·제56조의5제6항제3호·제56조의6제8항제3호 및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[] 선납 총당 [] 반환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신고인(사업주)

(서명 또는 인)/ [] 보험사무대행기관
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·센터)장 귀하